해사례연구 협착사고

프레스가동중수정작업하다금형에협착



1. 재해발생 경위

2005년 8월 ○일 09:10분경 인천시 소재 ○○자동차공장 프레스(6대)라인에서 자동차 우측판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판 송급 및 취출장치를 자동화하여 시험운전 하던 중 철판이 프레스 금형의 정위치에 안착되지 않자, 프레스 가동상태에서 철판 수정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상하금형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방호장치 기능 임의해제
- 나. 프레스 작동 중 정비 작업
- 다. 안전블록 미설치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방호장치 임의 해제금지

재해사례연구

협착사고

방호장치의 수리·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레스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.

나.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

프레스의 정비, 청소, 급유, 검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 지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.



다. 보수 작업시 안전블록 설치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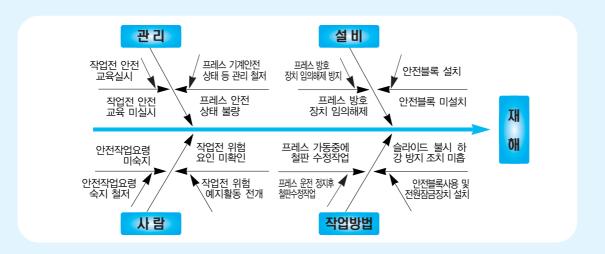
보수. 금형조정 등의 작업시에 슬라이드 불시하

강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블록을 사용하고, 타 작업자의 오조작 방지를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후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"수리중"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

4. 법위반사항

- ·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·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

재사례연구 감전사고

비오는날핸드라인더작업중감전된



1. 재해발생 경위

2005년 8월 ○일 10:40분경 충남 소재 ○○특장 옥외작업장에서 비가 오는 날 특장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비에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전 핸드그라인더로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마작업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휴대용 전동기계 · 기구 외함접지 미실시
- 나 누전차단기 미설치
- 다.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미사용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 접지 실시

휴대용 연삭기 등의 전동기계 ·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 · 기구의 외함에 접

재해사례연구 감전사고

지를 실시하여야 함.

나.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

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(정격감도전류: 30mA, 동작시간: 0.03초)를 설치토록 하여야함.

다.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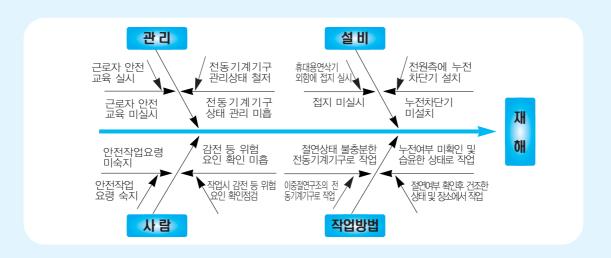
휴대용 연삭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는 기능절연과 보호절연이 되어있는 이중절연구조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.



4. 법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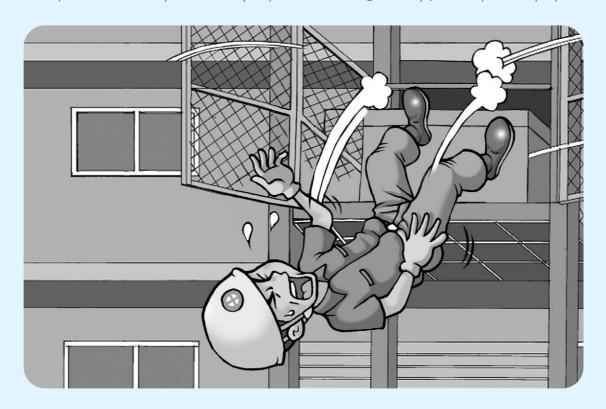
- ·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·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

™^{™™연구} 추락사고

리프트로배전반케이스운반중출입문이열려추



1. 재해발생 경위

2005년 7월 ○일 09:10분경 경기도 소재 ○○엔지니어링 전기배전반 제작업체 옥외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로 배전반 케이스(80kg) 운반작업을 하던 중 3층으로 운반되어진 배전반 케이스를 건물 내부로 밀어넣기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반대 출입문에 기대어 밀던 중 여닫이문 빗장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문이 열리면서 6.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출입문 잠금장치 불완전 체결
- 나. 작업방법 불량
- 다. 탑승금지 표지 미부착 및 안전모 미착용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가. 출입문 잠금장치 완전 체결

째에연구 추락사고

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빗장을 완전히 체결하고 출입문 내부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형 도어록을 완전히 체결한 후 리프트를 작동시켜야 함.

나. 작업방법 개선

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운반구에 올라가지 않고 건물내부에서 끌어 당기는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다. 탑승금지 표지 부착 및 안전모 착용

근로자가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탑승금지 표지부착 및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 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

4. 법위반사항

- ·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·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